

‘원샷법’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위한 제언



김현태 변호사

우 리 기업들이 처한 경쟁환경이 녹록하지 않다. 중국이나 인도의 비약적인 성장은 무섭고, 선진국 기업들의 견제는 더욱 강화되어 더욱 복잡하고 치열한 경쟁구조가 되고 있다. 하던 일만 그저 열심히 하면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던 순진한 기업마인드로는 생존조차 어렵다.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기존 사업을 처분하거나 다른 기업과의 제휴를 모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구조 재편이 시도되고 있고, 지속적인 성장과 생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사업구조 개편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다.

“**합병까지 두 달 반, 짧지 않아
합병절차 촉진 방안 모색 필요**”

장애요소 일거 해소 기대

이러한 기업환경에서 이른바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의 입법 논의가 한창이다. 금년 6월 중에 입법안이 마련되어 빠르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그러한 입법에 관한 찬반

논란도 일부 있었다. 이 특별법을 일부 언론은 ‘원샷법’이라고도 부른다. 사업재편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모든 법령상의 절차적, 실체적 규제 중에서 신속하고 능동적인 사업재편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하고, 이들을 하나의 특별법으로 일시에 풀어버리거나 완화한다는 의미 일 것이다.

사업재편지원특별법에 담을 내용에 관하여 경제계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제언이 있었다.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도 등 현행 법령상 사업재편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서 기업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그러한 경우에 대하여는 회사법의 절차규정이나 공정거래법의 여러 규제를 완화하고, 일부 조세 또는 금융 차원의 지원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2014년 시행된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과 큰 그림에서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회사법상의 절차규정을 완화시키자는 제언은 주로 소규모합병이나 간이합병의 요건을 완화하고, 채권자보호 절차나 구주권제출절차를 보다 간이하

게 하며,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일부 완화하지는 것으로 요약된다.

일본법과 제언 내용 유사

상장법인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를 가정하자.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절차는 공식적으로는 합병계약 체결 또는 당사회사들의 이사회 결의로부터 시작하는데, 합병을 완료할 때까지는 통상 그로부터 2개월 반 정도가 소요된다. 비상장법인도 주주구성이 아주 단순한 폐쇄회사들을 제외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시대의 기업들에게 2개월 반은 짧은 시간이 아니다.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의 중대성을 고려한다면 그 절차는 충분히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기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또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위한 시급한 상황에서 합병을 추진하는 기업이 2개월 반의 시간 동안 합병의 완료를 기다리는 여유를 누릴 수 없는 상황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부실한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고 소수주주 권리의 보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합병을 위한 절차를 보다 촉진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합병을 가정하여 보았지만, 합병 이외에도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교환이나 이전, 영업양도 등 다른 사업재편 수단에 관하여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상법은 합병에 있어서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가 기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존속회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합병하는 이른바 소규모합병을 허용하고 있다.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면 주주총회 결의를 생략할 수 있는 외에 합병 반대주주에 대한 주

식매수청구권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매수청구권의 배제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소수주주들의 회사관계로부터의 탈퇴기회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보다 신중하게 검토될 일이지만, 주주총회의 기능이 상당 부분 형해화되어 있는 현실

“ 소규모합병 20%로 완화 무방
일본 회사법과 같은 요건이고
우리 벤처기업도 같은 비율 적용 ”

을 고려하면 적어도 주주총회 결의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서는 소규모 합병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만든다면 20% 정도로 완화해도 무방해 보인다. 20%는 일본 회사법과 같은 요건이고, 이미 우리 벤처기업에도 같은 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간이합병도 완화 검토 필요

한편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회사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는 간이합병을 할 수 있다.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회사 주주총회는 사실상 무익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정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요건의 완화도 같은 취지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의 2/3를 소유하는 경우라면 주주총회의 결과는

사실상 존속회사의 의사에 의존하게 되는 점에서 2/3 정도로의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 그 2/3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결권을 가지는 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해야만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는데, 종래 상법이 단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 이라고만 규정하여 이 점이 불분명했는데, 특별법은 이 점도 고려하였으면 한다.

주총 법정기간도 재고해봐야

사업재편의 주요 수단이 되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영업양도 등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주주총회의 개최까지는 기준일의 설정과 소집통지를 위한 법정기간으로 인하여 5~6주가 소요된다. 우리 상법은 아주 오랫동안 기준일 이전 2주 전의 공고와 주주총회 2주 전의 소집통지를 요구해 왔

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나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선례들이 있으니, 그런 선례와 같은 정도의 기간을 정해도 좋을 것이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중요한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회사법 관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퇴로를 부여하여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 제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한다. 그러나 주식매수청구제도가 그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시세차익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을 무력화시킨 사례들이 있었으니, 이 특별법에서는 그에 관한 제도의 개선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 기업은 선진국과 신흥경제국 사이에서 양측과 모두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지만, 그 경쟁의 판도가 우리 기업들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지만은 않다. 여러 M&A 수단이 동원되어야 하는 사업재편은 우리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일상적인 문제가 되었지만, 우리 기업의 사업재편에 적용되는 제도 개선의 속도는 다른 경쟁국을 따르지도 못하고, 기업환경의 변화속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은 주요 경쟁국 기업에 비하여 열악한 제도적 환경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대외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로서 기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그 입법은 과감하고 또한 신속해야 할 것이다. 이 특별법의 입법에 있어서 공정거래법이나 세법 분야에 관하여도 같은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향적인 입법을 기대해 본다. ■

김현태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사업재편은 기업 생존과 직결 입법 과감하고 또한 신속해야”

는데, 성숙한 정보화와 주주총회의 형제화를 고려할 때 이 2주의 기간이 적절한 것인지는 상법 차원에서도 재고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사건으로는 이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이들 기간을 모두 1주 정도로 단축하여도 충분히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주주총회 이후의 절차로서 요구될 수 있는 채권자 보호 또는 구주권 제출을 위한 법정기간의 단축도 필요하다. 이러한 기간 단축에 관